

# 2026년 5월 성내3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회의록

결재	간사	부회장	회장
			

일시	2026. 5. 18.(월) 19:00	장소	성내3동주민센터 2층, 제1강의실
참석자	- 주민자치 위원: 송영하 회장 등 39명 (결원 5명) -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 1명		
회의 결과			

## ■ 보고안건

### 1 성내3동 주민자치회 분과 재편성

#### 1. 자치계획 실행사업

##### 1) 복지분과: '인생네컷(장수사진)'

- 선정대상: 80세 이상선정
- 선정대상 순위: 취약계층, 홀로 어르신 80세이상 선정(주민센터 복지과 협업)

##### 2) 축제추진분과: '성내3동 골말체육축제'

- 축제일시: 2026년 9월 12일(토) 오후 1시~5시
- 축제장소: 서울제일교회(예정)
- 축제내용: 추억으로 가는 골말축제
- 추진사항: 단체전, 개인전, 느린우체통, 옷으로 보는 시간여행, 체험등

##### 3) 환경안전분과: '성3 환경안전지킴이'

- 분과회의: 매월 정기회의 후 분과회의
- 환경 캠페인: 시기 및 장소는 강사일정과 공원 및 골말체육축제 추진예정
- 화단가꾸기: 4개조 운영

#### 2. 자치계획 비예산 실행사업

##### 1) '성내3동 골말따숨(머리)나눔'

###### ① 1호점 로데오미용실(강동구 양재대로103길 29): 매월 셋째주 월요일 헤어커트 1명

- 1차: 2026년 1월 19일(월) / • 2차: 2026년 3월 16일(월)
- 현판식 2026년 3월26일 / • 3차: 2026년 4월20일(월)
- 4차: 2026년 5월18일(월)

##### 2) '성내3동 골말따숨(곳간)나눔'

###### ① 1호점 호텔베이커리(강동구 풍성로54길 56): 매월 셋째주 수요일 10가구

- 협약식: 2026년 3월20일(금) / • 1차: 4월 15일(수)

###### ② 2호점 낙원떡집

- 협약식: 2026년 3월25일(수) / • 1차: 4월 20일(수)

## ■ 기타안건: 주민자치회 위원 관련 「공직선거법」 유의사항

### □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60조)

- 이·통·반장 및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포함) 위원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7장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임해야 함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주민자치회 위원 적용 여부 : 대법원 적용

[대법원 2025.5.1., 선고 2025도3282] 「공직선거법」 위반

☞ 주민자치회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에 포함**

###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 1. 25.>
5.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주민자치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 주민자치회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26.3.4. 질의회신)

- 주민자치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말함)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될 수 있음
- 한편, 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을 것인바, 같은 법조항의 '선거기간'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선거기간'을 의미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향후일정: 2026. 6. 22.(월) 19:00 6월 정기회의 개최

회의  
사진

